

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

전남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“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. 12. 30.

전라남도지사

1. 추진방향

-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, 2,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,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제조·가공업체의 유통판매망 구축 지원
-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 다각화 및 소득증대 기여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5. 1. ~ 12월
- 사업비 : 500백만원(도비 250^{50%}, 자부담 250^{50%})
- 사업량 : 8개 업체 내외 ※ 업체수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체 등
 - 1년 이상 운영 실적 및 자부담(사업비 50%)를 확보한 업체

3. 사업내용

- 지원기준 : 업체당 사업비 40~100백만원(도비 50%, 자부담 50%)이내 지원
- 판매채널 : 남도장터, 네이버, 카카오, 11번가,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, 홈쇼핑 방송채널 등
- 지원내용 : ① 온라인기획전(할인판매) 및 상세페이지 제작, ② 광고 및 마케팅, ③ 라이브커머스, ④ 홈쇼핑

3.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

○ 신청자격(필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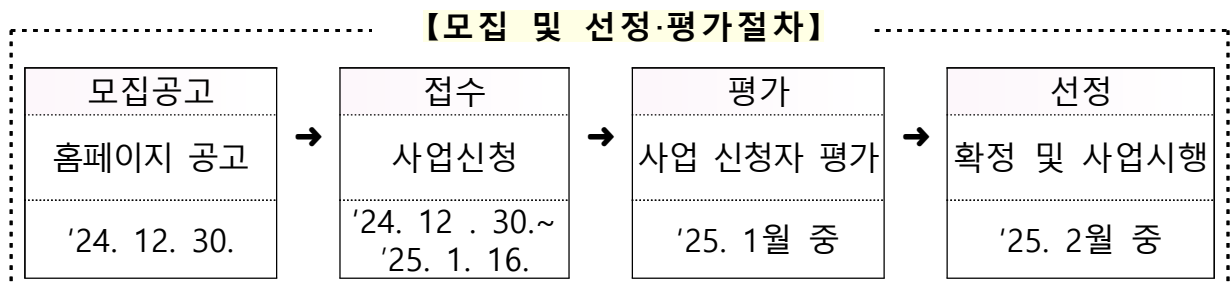
- 자부담(사업비50%)을 확보한 생산자 단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체 등
- 농업법인·조직의 경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·가공법인 제외)
-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,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. 단, 작목반(비법인)이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으로 전환된 경우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
-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

○ 우대사항

-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 지원 업체
- HACCP 및 GAP 인증을 받은 업체

4. 선정절차

-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



*** 사업자 확정 후 SGI서울보증 보조금 지급보증보험 보증기간(확정일~'26. 2.)까지 가입 제출**

5.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'24. 12. 30. ~ '25. 1. 16.(18일간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사업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,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
 - 우편 :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
 - 이메일 : hbangwo@korea.kr
- ※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 소인분에 한 함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상품기술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기타 증빙자료 등
- 문 의 처 :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(☎ 061-286-6426)

〈붙임 1〉

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자	구 분	☐ 개인 ☐ 생산자단체 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☐ 농식품 제조·가공업체 ☐ 기타()			
	신청 사업	☐ 온라인 기획전 ☐ 광고 ☐ 라이브커머스 ☐ 홈쇼핑	사업 수행업체	☐ 남도장터 ☐ 기타()	
	사업자명	대표자명			
	사업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			
	주 소	법인설립일자			
담당자	이 름	e-mail			
	전화번호	휴대 폰			
매출실적 (1년 이상)	'23) 백만원 → '24) 백만원		출자액 (1억 이상)	백만원	
사업비 (천원)	계		도비	자부담	
품질인증	○ HACCP, GAP, 친환경농산물(유기농·무기농), 기타 취득 인증 작성				
구비서류	○ 상품기술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자부담(사업비 50%)을 확보한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				
다른사업 지원이력	○ 해당사업 이외의 외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현황 작성 ○ 지원기관, 지원사업명, 지원금액 작성				
사업신청 제품	상품코드번호	보장가(공급가)	면세/과세	배송비	비고 기존제품 /신규제품
	P0000BMW	14,900원	면세/과세	1. 무료배송 2. 3만원 이상 무료, 미만시 3천원 3. 고정배송비 3천원	
상기와 같이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,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 ☒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, 제공에 동의합니다. ☒ 사업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,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·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청자 : 업체명 대표 (인) 전라남도지사 귀하					

〈붙임 2〉

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상품기술서

상 품 명			담 당 자	
보 장 가			연 락 처	
원재료명 및 함량			이 메 일	
사이즈/중량			제 조 원	
상 품 구 성			원 산 지	
상 품 설 명 (성능/효능/가능)				
섭 취 방 법				
유통기한/보관방법				
반 품 처	주 소			
	담 당 자		연 락 처	
A/S	유의사항			
	지 점 명		연 락 처	
	담당자명		주 소	
출 고 지	주 소		담당자명/연락처	
회 수 지	주 소		담당자명/연락처	
상 품 이 미 지				
사진1		사진2		

<붙임 3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
전라남도는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요청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필수항목	신청정보(기업명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, 연락처, 소속정보 메일주소, 휴대전화 등)
선택항목	그 외 사항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준영구

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에 의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단,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.

4.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,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수집·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정보주체가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(☐ 동의합니다.

☐ 동의하지 않습니다.)

5. 제3자 제공 (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,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)

- 제공기관 : 전라남도,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
- 제공목적 : 정책점검 및 사후관리, 의견수렴, 공공기관 정책자료 등
- 제공항목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주소, 전자우편주소 등
- 이용기간 : 3년 이내
-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(☐ 동의합니다.

☐ 동의하지 않습니다.)

2025년 월 일 소속 : _____ 성명 : _____

〈붙임 4〉

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사 업 명					
신 청 자	성 명 (단 체 명)		대 표 자		
	주 소				
	등 록 일		전화번호		
교부신청금액	금 원(W)				
총 사업비 (단위 : 천원)	계	도비	시·군비	자부담	기타
			-		-
사업개요	○ 사업목적 :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 다각화 및 소득증대 기여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월 ○ 사업내용 : 전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망 지원				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신 청 일 : 년 월 일 신 청 자 : (서명 또는 날인) 전라남도지사 귀하					
붙임 : 사업계획서 1부,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, 보조사업 청럼이행 서약서 1부					

사업계획서

☐ 사업명 :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

☐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 다각화 및 소득증대 기여

☐ 사업개요

- 기간 : 2025. 1. ~ 12.
- 판매채널 :
- 판매상품 :
- 주요내용 : 전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망 지원

*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

☐ 소요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계	%	지방보조금	%	자부담	%	비고
	100		50		50	

☐ 사업의 성과

- 매출목표 : 500,000천원(사업비 투입 대비 5배)
- 기대효과 : 자사 제품 판촉행사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

☐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

(단위 : 천원)

연도	총자산	총부채	비고

□ 세부 수행계획(예시, 업체별 사업신청서에 따라 작성)

세부사업명	세부 사업내용	비 고
온라인 기획전	○ 사업기간 : '2025. 1. ~12월 ○ 판매채널 : 남도장터, 네이버, 카카오, 11번가 등 ○ 판매상품 : ○ 홍보방법 - 사이트별 메인·카테고리 기획전 노출 - 사이트별 검색창 위젯, 1순위 - 사이트별 메인, 카테고리 광고영역 단품 노출 - 사이트별 App 푸쉬 - 포털 사이트 광고(네이버, 다음) ○ 수 수 료 : 6~10% 내외(판매채널별 상이함)	
라이브커머스 (라이브커머스 신청업체에 한해 작성)	○ 사업일정 : '2025. 1. ~12월 ○ 송출플랫폼 : 11번가 '라이브11', 카카오 '특딜라이브', 티몬 'TVON' 등 ○ 방송제작업체 : ○ 판매제품 : ○ 방송시간 : 60분 ○ 수 수 료 : 9%(일반관리비 4%, 판매수수료 5%) * 송출플랫폼 및 방송조건 등은 판매상품 및 방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

□ 예산집행계획(예시)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명	항목	단 가	수 량	총 액	비 고
온라인 기획전	총 계			60,000	판매채널, 송출플랫폼 등에 따라 항목별 집행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
	광고 프로모션, 마케팅	5,000	4	20,000	
	상세페이지 제작	10,000	1	10,000	
	할인쿠폰	10	3,000	30,000	

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
□ 보조사업자

단 체 명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소재지	전화번호

□ 보조사업

(단위 : 천원)

보조사업명	총 사 업 비					사업기간
	계	국고 보조금*	도비 보조금	시·군비 보조금	자부담	
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	(100%)	(%)	(50%)	(%)	(50%)	'25. 1. ~ 12.

*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

□ 최근 5년간 수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	보조사업명	보조액	정 산 반환액	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

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.

지방보조사업자 기관·단체명 대표 (서명)

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(제37조부터 제39조까지)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 . . .

기관단체명 대표

(서명)

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

성명

(서명)

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

성명

(서명)

보조금 교부조건

[일반사항]

1. 보조사업자(간접보조사업자 포함. 이하 “보조사업자”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)는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.
2.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「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」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.
4.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『별도의 계정』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5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.
6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.(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 과목으로 납입)
7. 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지사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, 서류, 기타,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수행시]

1.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 - 가.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
 - 나.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.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
2.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전라남도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3.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, 폐지승인 후 일정 기한(민간보조사업의 경우 1개월)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정산시]

1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(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.
3.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 -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
 -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
 -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
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, 증거서류,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,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.

※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의거하여, 적법·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